

11월 수시공시 변경보고서

1. 대상펀드

- 하나UBS대한민국1호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2. 관련 근거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 3항

3. 적용 대상 :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,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소규모 정리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모펀드 이전, 합병, 교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

4. 해소방법 : 모펀드 교체

5. 공시기준일 : 2019년 10월 1일 ~ 2019년 10월 31일

6. 소규모 발생일 : 2019년 10월 5일 소규모 해소일 : 2019년 10월 28일

7. 공시일 : 2019년 11월 1일